

|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제390호         |
| 의결연월일 | 2021. 10. 18. |

-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-

#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10. 8.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10. 8.

다. 상 정 일 자 : 2021. 10. 18.

제274회 예산군의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재무과장 : 복 준 수)

### 가. 제안이유

-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 지방세 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출연기관 : 한국지방세연구원
- 출 연 금 : 7,095천원(전년도 6,805천원 대비 290천원 증가)
- 지원근거
  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1항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제3항, 「지방세기본법 시행령」 제94조

○ 출연금 산정기준

- 전전연도(2020년)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2

※ 2020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: 59,127,346천원

### 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박 우 현)

- 본 동의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 받아 지방세 연구·조사·홍보, 지방세 학술세미나 실시 및 지방세 포럼 발간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22년분 출연을 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
- 지방자치단체는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, 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,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# 4. 질의·답변요지

- 없 음

### 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### 6. 심 사 결 과

- 원안가결

### 7. 소수의견 요지

- 없 음

#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 음